

○ 개별 기준(시행규칙 제7조 「별표 2」)

직종별	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
상담소 등의 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3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사무국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상담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음악치료사·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(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)
직업 훈련교사	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
사무지원	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▶ 개별 기준상의 경력인정 범위(상근경력 인정 원칙)

- 비상근 근무자 및 자원활동가: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 예) A라는 자원봉사자가 2014년 1월에 1~3째 주까지 매주 15시간을, 4째 주에는 12시간을 근무하고, 2월에는 총 65시간을 근무한 경우. A의 근무 경력은 1개월 3주로 산정
- 경력산정 시 유의사항 : 급여 지급과 관련된 경력 산정과는 무관, 4주를 1개월로 계산